

2026. 10. 13.(화)

-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-
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

의안 번호	2026-116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6. 10. 13.
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회

1. 주 문

-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
 - 2026년 제2차 정례회 4일차부터 9일간(11. 16. ~ 24.)
- ※ 제2차 정례회 회기: 11. 13. ~ 12. 17. 예정

3. 관련법규: 붙임

-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
-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

【붙임】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□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2조(감사)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.